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한국원격의료학회, 2023. 8. 23.

제 1 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진료의 실시와 관련하여 환자, 의사, 설비제공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능동적인 치료 참여와 정보 제공을 촉진하여 환자의 건강과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¹

1. “대면진료”란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와 마주하여 관찰하는 형태의 진료이다.
2. “비대면진료”란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수단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진료이다.
3. “설비제공자”는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서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기 위해 의사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사 간 유무선상 진료 연결, 진료비 결제, 전자처방전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 3 조 (비대면진료 실시의 기본 원칙)

- ① 의사는 환자의 의료접근성 등 권익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사는 제 4 조에 따라 의사 본인이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증하고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의사는 제 5 조에 따라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에 관하여 고지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사 측의 사정만으로 또는 설비제공자의 영리를 주목적으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의사는 환자로부터 제 6 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에 입각하여 비대면진료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그 정보로 적절한 진단,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신중히

¹ 전반적으로 비대면진료연구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2023. 4.) 참조.

판단하고, 제 7 조에서 규정하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인지될 경우 신속하게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대면진료로의 전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의사는 비대면진료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안전성·필요성·유효성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직업적·윤리적 기준 하에 실시하며,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비대면진료의 안전성·필요성·유효성의 정기적 평가·검증에 협력한다.
 5. 의사는 비대면진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학관리의 연속성, 생활습관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안내를 제공한다.
- ② 환자는 자신이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한 정보에 입각하여 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제 6 조에 따라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병력·특이체질·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설비제공자는 매개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의사, 약국 간의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² 이를 위해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의사와 환자의 본인확인, 제 2 호에 따른 의사의 고지와 환자의 비대면진료 희망 의사의 표시, 제 2 항에 따른 환자의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와 설비를 환자와 의사에게 제공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환자의 의료데이터가 누설되거나 변조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의사의 관련 법령 준수에 조력해야 한다.
 4. 처방은 의사의 진료권과 선택에 전적으로 따르며, 의사에게 대체조제 또는 임의조제를 권고 또는 강요할 수 없다.³
 5. 설비제공자 중 의약품 배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처방과 동시에 의약품 배송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⁴

제 4 조 (본인확인)

² 위 가이드라인.

³ 위 가이드라인.

⁴ 위 가이드라인.

- ① 의사는 비대면진료 접수 및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환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⁵ 의사는 정확한 환자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자에게 그 확인을 거듭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확인을 해 주지 아니할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를 제외하면 진료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 ② 의사는 비대면진료의 개시 전 본인이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설비제공자는 의사·환자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휴대전화인증·전자인증·생체정보인증·아이핀 등 비대면환경에서의 본인확인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고지 및 환자의 동의)

- ① 의사는 비대면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대면진료 시에는 문진과 제한된 시진만이 가능하고, 청진·타진·촉진과 본격적인 시진, 기구적·화학적 검사의 활용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비대면진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환자가 자가진찰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대면진료를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비대면진료의 특성 상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점, 환자가 비대면으로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종양·감염병·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이 누락될 수 있어 비대면진료를 받은 사실이 이러한 진단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지연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환자 스스로가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대면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점
 3. 비대면진료 이후 증상이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하여 하는 점
 4. 정보기술의 오류로 인하여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점
 5. 의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
- ② 의사는 환자가 제 1 항에 따른 고지를 수령한 후 이에 입각하여 비대면진료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에 따른 고지와 제 2 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의사 표시의 확인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⁵ 위 가이드라인.

1. 해당 의사가 해당 환자에게 이미 이러한 고지를 이행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진료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설비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해당 환자에게 이러한 고지를 제공하고 해당 환자의 비대면진료 의사 표시를 수령하여 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3. 의사가 환자의 응급상황 등 긴급한 사유로 고지 및 비대면진료 의사 표시 확인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④ 제 1 항에 따른 고지와 제 2 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의사의 표시는 설비제공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고지 화면 등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제 6 조 (환자의 정보 제공)

- ①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병력·특이체질·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환자가 의사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거나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설비제공자는 환자의 정보 제공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증상별 온라인 자가진단표의 개발·제공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향후 의료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될 경우 기술적, 법령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 조의 2 에 따른 환자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에 조력한다.

제 7 조 (초진 비대면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및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⁶

- 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에 해당하거나 증상이나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대면진료로의 전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은 법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가 금지되어 있거나, 긴급성 또는 정보량이나 대응 단계의 문제로 초진으로부터의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별표 1] (의사용), [별표 2] (환자 및 예약접수 응대용)를 권고한다.
- ②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히 기저질환 등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별표 3]을 권고한다)의 처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⁶ 별표 1 내지 3 은 전반적으로 일본의사회연합, “온라인진료의 초진에 관한 제언” (2021. 6. 1.) 참조.

- ③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권고사항으로서 법적인 제한에 추가하여 일률적으로 초진 진료나 처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는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다.

제 8 조 (유권해석 등) 유관 단체는 환자가 제 4 조에 따른 본인확인, 제 5 조에 따른 비대면진료의 희망 표시, 제 6 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또는 의사가 제 7 조에 따른 대면진료·처방 전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법상 제 15 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동 조항에 따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기 위한 유권해석 기타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주요 참고자료:

비대면진료연구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2023. 4.)

대한내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2023. 5. 22.)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Ethical Practice in Telemedicine](#)” (1.2.12 of AMA Code of Medical Ethics)

일본 후생노동성,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 (2023. 3. 개정판)

일반사단법인 일본 의사회연합, “[온라인진료의 초진에 관한 제언](#)” (2021. 6. 1.)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의사용

진료과목	긴급성으로 인해 초진이 비대면진료에 부적합	정보량이나 대응 수단의 문제로 초진이 비대면진료에 부적합
내과	- 호흡기 증상 -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발생한, 숨막힘 또는 호흡 곤란 - 안정 상태에서의 호흡 곤란 - 각혈 (대량의 혈담) - 급성의 격렬한 기침 - 천명 -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발생한 목소리 변화 (쉰 목소리 등) - 순환기 증상 - 강한 혹은 악화되는 흉통/흉부 압박감 - 갑자기 시작되는 두근거림 - 증상을 동반한 혈압 상승 - 소화기 증상 - 강한 복통 - 강한 메스꺼움/구토 - 토혈 - 혈변/설사 - 신장/비뇨기 증상 - 발열을 동반한 허리통증, 배변장애, 하지의 증상을 동반한 허리통증 - 기타 - 강한 통증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이른바 감기 증상 중, 하기의 심각한 위험 요소에 해당하는 것 (단,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등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신종 급성 호흡기감염증의 경우, 감염 지역으로의 여행, 심각한 위험 요소(하기 참조), 심각한 증상이 없다면, 적절한 자가 치료 및 대면 진료의 타이밍을 안내하고, 비대면진료를 진행할 수 있음) 【심각한 위험 요소】 - 고령자(65 세 이상)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만성 신장 질환 - 당뇨병 - 고혈압 - 심혈관 질환 - 비만(BMI 30 이상) - 수일간 진행되는 체중 감소 또는 증가, 부종 - 지속적 또는 증가하는 혈담
신경과	- 어지러움 - 실신 - 의식 장애 - 경련 - 근력 감소 12 시간 이내의 간질, 발작 유사 운동 - 감각 상실/이상 감각/신체의 마비 - 안면 마비, 안검하수	

	9. 말하기장애 또는 삼키기 어려움 10. 지금까지 최악의 두통 11. 발열을 동반한 두통 12.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또는 시야 이상 13. 보행 장애	
정신건강의학과	1. 환자 본인의 진찰에 대한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약물 등의 강한 영향을 받는 경우 3. 자해 또는 타해 행위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외과	1. 각 분야 공통 - 수술 후 고열 2. 일반 외과 - 외상 상처 또는 수술 상처(출혈, 배농, 췌심통증, 심부에 이르는 것) - 출혈 등을 동반한 수술 상처의 이상 - 사타구니 부위의 통증 또는 복부벽의 돌출 - 어지러움이나 호흡 곤란을 동반한 벌레 물림 3. 소화기 외과 - 수술 후 각혈 · 설사 · 혈변 - 수술 후 복통 4. 호흡기 외과 - 수술 후 호흡 곤란 - 수술 후 각혈(혈담) 5. 심장혈관 외과 - 수술 후 흉통 - 갑작스러운 하지 부종 - 발 또는 발가락의 검은색 변화를 동반한 냉감 6. 소아외과 - 사타구니 부위나 배꼽 부위의 돌출(헤르니아) 7. 내분비 외과 - 호흡 곤란이나 천명을 동반한 경부 응어리	1. 일반 외과 - 출혈, 배농, 통증을 동반한 몸의 표면의 응어리 2. 소화기 외과 - 인공항문의 이상 3. 유방외과 - 유방의 이상 - 유두에서의 이상 분비
비뇨의학과	1. 통증 또는 발열을 동반한 요로 증상(배뇨 곤란, 빈뇨, 요실금) 2. 급성 발작성 배뇨 곤란(요폐) 3. 급성 발작성 음낭부 통증	1. 육안으로 확인되는 혈뇨 2. 소변 양의 감소

산부인과	- 임신 가능성이 있는 속발성 무월경(이소성 임신 등 긴급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 포함) - 임신과 관련된 증상 또는 질환(조산직전, 상위태반조기박리, 임신 고혈압 증후군 등 임신과 관련된 질환이, 태아의 생명과 관련되며, 온라인에 의한 간접적인 진료로 처리하기 곤란) - 복통, 허리통 - 심한 빈혈로, 긴급 처치가 필요한 생식기 출혈	- 생식기 출혈 - 생식기 분비물, 냉 등 - 폐경 장애로 판단되는 어지러움, 두통 (신경과 항목 참조)
이비인후과	- 편측성 난청이나 이명 - 강한 인후통이나 삼키기 어려움 -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발생한 목소리 변화 - 기관지 천식의 심한 발작 우려로 인한 호흡 곤란이나 천명 - 뇌허혈이 의심되는 어지러움 - 골절이 의심되는 외상 - 외이도, 코, 후두인두부의 이물질 - 아나필락시스	지혈 처치가 필요한 코 출혈
안과	- 안구 외상 - 급성 시력 장애 - 갑자기 생긴 복시 - 갑작스러운 시각 변화 - 갑작스러운 격렬한 눈 통증 - 급성 충혈, 눈꺼풀 부종	다량의 눈물샘, 눈곱 분비
피부과	병변 부위의 자세한 시각 검사가 필요하고, 이는 영상의 품질에 크게 의존하므로, 진료에 적합한 고품질 영상이 확보된 것을 전제	
	- 전신증상(발열, 피로감, 복통,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한 피부 변화 - 극도로 강한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피부 변화 - 심한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변화 - 수포를 동반한 피부 변화	- 영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피부 변화 - 본인 또는 보조자가 촬영할 수 없는 부위(음부, 구강 내부, 등 등)에 있는 피부 점막 변화 - 피부 종양, 색소성 변화 - 백선, 칸디다 등의 진균 감염이 의심되는 피부 변화
정형외과	- 경부나 허리, 등의 통증 중 -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 - 사지의 저림이나 통증, 피로를 동반하는 경우 - 방광, 직장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 신체 동작이 어려운 경우	- 경부나 허리, 등의 통증 -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경우 - 신체 동작이 어려운 경우

	2. 사지 또는 관절 통증 중 • 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체중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경우 • 변형을 동반하는 경우 3. 보행 곤란 4. 손발의 저림, 피로 5. 외상 6. 수술 부위의 열감, 발적, 침출액(진물)	• 65 세 이상이며 경미한 외상 (넘어짐, 엉덩방아 등) 이후 발생한 경우 2. 사지 또는 관절 통증 • 발열, 열감,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 •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3. 교통사고 또는 산재 사고로 인한 모든 증상
소아과	1. 경련, 의식이 흐림(일어나지 않음, 건지 못함, 피로, 근긴장저하, 경면증, 기면증, 반응이 부족함) 2. 호흡이 나쁨(호흡 곤란, 호흡 불쾌감, 노력 호흡) 3. 기분이 좋지 않음(피곤함, 일어나지 않음, 너무 조용함, 경면증, 기면증, 반응이 부족함, 얼굴 색이 안 좋음, 웃지 않음, 힘이 들어가지 않음, 수유 문제 등) 4. 탈수(바나절 이상 수분 섭취를 못함, 소변 양이 뚜렷하게 감소되고 농축되어 있는 경우) 5. 저체온증(보온 조치로 개선되지 않는 저체온, 특히 활력 부족이나 호흡 이상 또는 안색 불량을 동반한 저체온) 6. 열사병, 고체온증(두통, 하품, 구역질, 구토, 근육 긴장, 근육통, 종아리 경련 등) 7. 외상 전반(화상, 동물에 물림, 구강 외상 포함) 8. 기타 외인성(이물 삼킴, 귀와 코 내부 이물 등) 9. 강한 통증(두통, 흉통, 복통, 음낭통, 관절통, 고환 통 등) 10. 대량의 출혈, 반복 출혈(토혈, 각혈, 혈변, 혈뇨, 수분 이상 멈추지 않는 코피,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사용 중인 경우) 11. 예방 접종 후의 컨디션 저하	1.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증상: 마시고, 놀고, 자는 것에 대한 불쾌함을 나타냄. 유아의 경우 기운이 없어 울지 않는 경우. 울음소리가 평소와 다르고, 부모가 대응하지 못한다거나, 어떤 면에서는 평소와 다르다고 가족이 불안을 느끼는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증상: 예방 접종 이력이나 성장 이력 등의 진단을 통해, 담당 의사가 아동 학대 의심을 느낀 경우. 진료 행동에 위화감을 느낀 경우. 3. 다음에 해당하는 발열: 발열 3 일째 이후인 경우. 생후 4 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되는 오한 전율, 식욕부진, 활력 부족, 안색 불량,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소아암, 수술 후, 면역 결핍 등 중증 위험이 있는 경우. 4. 다음에 해당하는 기침: 다호흡, 함몰 호흡, 노력 호흡, 안색 불량(청색증 포함),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개기침을 하는 경우. 천명, 지속적인 기침이 있으며, 흡입 등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5. 다음에 해당하는 코막힘 또는 콧물: 코막힘으로 수유 장애나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호흡 곤란이나 노력 호흡, 청열거림, 활력 부족이 동반하는 경우. 6. 다음에 해당하는 가슴 통증: 지속적인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 호흡 곤란, 식은 땀, 안색 불량, 입술 청색증, 활력 부족을 동반하는 경우. 외상 이력이 있는 경우.

		7. 다음에 해당하는 복통: 안색이 안 좋은 경우. 정도가 강하고 계속되는 복통이 있는 경우. 간헐적인 불쾌감, 혈변 또는 점혈변, 타르변(흑색변) 이 있는 경우. 8. 다음에 해당하는 구토: 혈성·커피 찌꺼기 모양의 구토, 담즙성 구토인 경우. 안색 불량과 함께 기운이 없어서, 하루에 3 회 이상 구토하는 경우. 9. 다음에 해당하는 설사: 통증이나 칭얼거림이 동반되는 경우. 빈번한 설사인 경우. 백색 변, 검은 변, 이상한 냄새를 동반한 변, 혈변, 점혈변, 타르변 등의 경우. 10. 다음에 해당하는 두통: 정도가 강하고 진통제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평소 두통과 다른 경우. 구토 등 다른 수반 증상을 동반한 경우. 11. 다음에 해당하는 귀 통증: 분비물을 동반한 경우. 외상이나 이물에 의한 경우. 해열진통제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12. 다음에 해당하는 배뇨통·빈뇨: 발열이나 불쾌함을 동반하며, 강한 통증이 있는 경우. 소변 검사가 필요한 경우. 13. 다음에 해당하는 등 통증: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14. 다음에 해당하는 사지 통증: 발열을 동반한 경우. 균형이 잡히지 않는 등 보행 이상을 동반한 경우. 15. 다음에 해당하는 발진·두드러기: 전신성 발진의 경우. 발열, 메스꺼움, 구토, 설사, 격렬한 기침이나 천명, 호흡곤란, 안색 불량을 동반한 경우. 자반이 강한 경우. 16. 다음에 해당하는 벌레 물림: 부어오름이나 통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 활력 부족, 호흡곤란, 소화기 증상, 말벌 등의 독충에 물린 이력이 있는 경우.
치과	1. 심한 치통이나 턱 안면 통증 2. 턱 안면 영역의 외상 또는 출혈	1.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나타나는 변화

	3. 구강 내 및 턱 안면 영역의 뚜렷한 부종 또는 발진 4. 신경 마비	
--	--	--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환자 및 예약접수 응대용

1. 전신 증상

- (1)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있음
 - ① 신형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이 있는 경우
 - ② 감염 지역을 여행한 경우
 - ③ 아래의 심화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 고령자 (65 세 이상)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만성 신장 질환
 - 당뇨병
 - 고혈압
 - 심혈관 질환
 - 비만
 - ④ 증상이 심한 경우
- (2) 수 일간 진행되는 체중 감소
- (3) 수 일간 진행되는 체중 증가
- (4) 수 일간 진행되는 부종
- (5) 어떤 증상을 동반하는 혈압 상승
- (6) 출혈, 배농, 통증 등이 있는 응어리
- (7) 일정 부위의 심한 통증
- (8)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을 동반한 벌레 물림
- (9) 아나필락시스(심한 알레르기 반응)
- (10) 외상
- (11)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 기인한 모든 증상

2. 목의 증상

- (1) 경부 통증으로:
 - ① 발열을 동반한 경우
 - ② 사지의 저림이나 통증, 피로를 동반한 경우
 - ③ 배뇨나 배변의 장애를 동반한 경우
 - ④ 신체 동작이 어려운 경우
 - ⑤ 안정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 ⑥ 체중 감소를 동반한 경우

(2) 경부의 응어리가 있으며 호흡 곤란이 있거나 숨이 헉헉거리는 것(천명을 동반)

3. 가슴에 관련된 증상

- (1) 갑자기 숨이 차거나, 호흡 곤란
- (2) 안정 상태에서도 계속되는 호흡 곤란
- (3) 급성의 심한 기침
- (4) 숨을 쉴 때 헉헉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천명)
- (5) 피가 섞인 가래(혈담)
- (6) 강한 또는 악화되는 가슴 통증/가슴이 압박되는 듯한 느낌
- (7) 갑자기 시작되는 심장 고동

4. 배에 관련된 증상

- (1) 심한 복통
- (2) 강한 메스꺼움/구토
- (3) 토혈
- (4) 변에 피가 섞이는 경우
- (5) 배꼽이나 다리근육(서혜부)의 돌출 (헤르니아)

5. 허리나 등에 관련된 증상

- (1) 허리나 등 통증에서
 - ①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
 - ② 손발의 저림이나 통증, 피로를 동반하는 경우
 - ③ 배뇨나 배변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 ④ 신체 활동이 어려운 경우
 - ⑤ 안정되어 있어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 ⑥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경우
 - ⑦ 65 세 이상이고 경미한 외상(넘어짐, 엉덩방아 등)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

6. 손이나 발에 관련된 증상

- (1) 손이나 발, 관절 통증에서
 - ① 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② 체중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 경우
 - ③ 변형을 동반하는 경우
 - ④ 발열, 열감,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
 - ⑤ 안정되어 있어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 (2) 손이나 발의 저림, 피로

- (3) 걷기 어려움
- (4) 갑자기 발이 부을 경우(부종)
- (5) 발이나 발가락의 검은 색 변화가 있는 냉감

7. 대소변 및 비뇨기에 관련된 증상

- (1) 통증 또는 발열을 동반한 요로 증상(배뇨 곤란, 빈뇨, 요실금)
- (2) 급성 발작성의 배뇨 곤란
- (3) 급성 발작성의 음낭부 통증
- (4) 혈뇨
- (5) 육안으로 확인되는 혈뇨
- (6) 소변 양의 감소
- (7) 배변 장애

8. 신경과 증상

- (1) 어지러움
- (2) 실신
- (3) 의식장애
- (4) 경련
- (5) 근력 저하 또는 마비
- (6) 12 시간 이내의 간질 발작
- (7) 감각 이상
- (8) 안면마비
- (9)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음(안검하수)
- (10) 말하기가 어려움
- (11) 이해가 어려움
- (12) 이제껏 최악의 두통
- (13) 발열을 동반한 두통
- (14)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 (15)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
- (16) 보행 장애

9. 수술이나 외상과 관련된 사항

- (1) 수술 후 높은 발열
- (2) 수술 상처의 열감, 붉은 기, 피나 또는 고름이 나오는 상태
- (3) 상처에 의한 부상 (출혈, 고름이 나오거나, 통증이 있음, 깊은 부위의 상처)
- (4) 인공 항문의 이상

10. 산부인과 증상

- (1) 임신 가능성이 있는 무월경
- (2) 임신과 관련된 증상 및 질환
- (3) 복통, 허리 통증
- (4) 생식기 출혈
- (5) 분비물, 냉 등
- (6) 폐경기 장애로 생각되는 어지러움 또는 두통 (신경과 증상 항목을 참조)

11. 이비인후과 증상

- (1) 편측성 난청 또는 이명
- (2) 강한 인후통이나 삼키기 어려움
- (3) 갑자기 발생한 목소리 변화(쉰 목소리)
- (4) 기관지 천식의 심한 발작 우려로 인한 호흡 곤란이나 천명
- (5) 뇌허혈이 의심되는 어지러움
- (6) 골절이 의심되는 외상
- (7) 귀, 코, 목에 이물질
- (8) 지혈 처치가 필요한 코 출혈

12. 안과 증상

- (1) 안구 외상
- (2) 급성 시력 장애
- (3) 갑자기 생긴 복시
- (4) 갑작스러운 시각 변화
- (5) 갑작스러운 격렬한 눈 통증
- (6) 급성 충혈, 눈꺼풀 부종
- (7) 다량의 눈물샘, 눈곱 분비

13. 피부과 증상

병변 부위의 자세한 시각 검사가 필요하고, 이는 영상의 품질에 크게 의존하므로, 진료에 적합한 고품질 영상이 확보된 것을 전제함.

- (1) 전신 증상(발열, 피로감, 복통,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한 피부 질환
- (2) 극도로 강한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피부 질환
- (3) 심한 통증을 동반한 피부 질환
- (4) 수포가 있는 피부 질환

- (5) 영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피부 질환
- (6) 본인 또는 보조자가 촬영할 수 없는 부위 (음부, 입 안, 등 등)에 있는 피부 점막의 질환
- (7) 사마귀, 종기, 뿔루지, 응어리, 모반
- (8) 무좀, 백선 등이 의심되는 피부 질환

14. 소아과 증상

- (1) 경련, 의식이 흐림(일어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며,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계속 누워 있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함 등)
- (2) 호흡이 나쁨(숨이 힘들거나, 호흡이 어려움 등)
- (3) 기분이 좋지 않음(피로해 보이거나, 일어나지 않으며, 너무 조용하고, 안색이 좋지 않거나, 웃지 않으며, 젖을 바로 끊는 등)
- (4) 탈수(반나절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거나, 소변 양이 분명히 감소하고 농축되는 등)
- (5) 저체온증(보온해도 개선되지 않는 저체온, 특히 활력이 없고 숨이 힘들어 보이며 안색이 좋지 않은 저체온 등)
- (6) 열사병, 고체온증(두통, 하품, 구역질, 근육 긴장, 근육통, 종아리 경련을 동반하는 것 등)
- (7) 외상 전반(화상, 동물에 물림, 입안을 다침 등을 포함)
- (8) 이물 집어먹음 (단추형 전지 등)
- (9) 코·귀 이물(장난감 등을 코에 넣음) 등
- (10) 강한 통증(두통, 흉통, 복통, 음낭통, 관절통 등)
- (11) 대량의 출혈, 반복 출혈(혈액을 토하거나, 혈변, 혈뇨, 20 분 이상 멈추지 않는 코피,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사용 중인 경우 등)
- (12) 예방접종 후의 컨디션 저하

15. 정신과 증상

- (1) 환자 본인이 진찰에 동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 (2) 약물 등의 강한 영향을 받는 경우
- (3) 자해나 타해 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가족 등과의 대화를 통해 그 가능성이 인지되는 경우

16. 치과, 구강외과 증상

- (1) 심한 치통이나 턱 안면 통증
- (2) 턱 안면 영역의 외상 또는 출혈
- (3) 구강 내 및 턱 안면 영역의 뚜렷한 부종 또는 발진
- (4) 신경 마비
- (5) 악성 종양이 의심되어 나타나는 변화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1. 항미생물제제
 - 항균제
 - 항진균제
 - 항바이러스제
 - 항기생충제
 - 예방접종용 약물
2. 항암제: 모두
3. 염증, 면역 및 알레르기에 대한 약물
 - 부신피질호르몬제
 - 진통제: 특히, 프레가발린(pregabalin), 미로가발린(mirogabalin) 비대면처방은 자제
 - 항알레르기제(일반의약품은 제한 없음)
 - 면역조절제
 - 면역억제제
 - 항류마티스제
 - 생물학적 제제
 - JAK 억제제
 - 진드기 추출물
4. 대사계에 작용하는 약물
 - 당뇨병 치료제
 -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 통풍 및 고요산혈증 치료제
5. 내분비계 약물
 - 모든 호르몬제: 단,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 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온라인 초기 진료에 적용 가능함
6. 비타민제 중:
 - 수액
7. 혈액제제, 혈액계에 작용하는 약물
 - 혈액제제
 - 조혈제

- 지혈제(트라넥삼산(tranexamic acid)은 제한 없음)
 - 항혈전제
8. 순환기계 작용하는 약물
- 항부정맥제
 - 디기탈리스(digitalis) 제제
 - 아조세미드(azosemide)
9. 호흡기계 작용하는 약물
- 기관지 천식 치료제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또는 이를 포함한 흡입제(톨로부테롤(tulobuterol) 패치제는 제한 없으나, 소아의 경우 소아과와 협의 필요)
 - 호흡곤란 개선제
 - 호흡 중추 자극제
 - 마약류에 해당하는 기침약
 - 항섬유화제제
10. 소화기계 작용하는 약물
- 간 질환 치료제
 - 담도 질환 치료제
 - 췌장 질환 치료제
11. 신경계 작용하는 약물
- 마약류
 - 파킨슨병 치료제
 - 뇌졸중 치료제(뇌경색 치료제)
 -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자율신경작용제)
 - 편두통약
 - 근이완제(중추성 근이완제는 가능함)
12. 신장·비뇨기계 약물
- 빈뇨 치료제
 - 과민성방광 치료제 중 항콜린제(anticholinergic)
13. 안과 약물
- 부신피질호르몬제(안약)
 - 동공확장제(산동제): 아트로핀(atropine), 트로픽아미드(tropicamide), 페닐레프린(phenylephrine) 등
 - 녹내장 치료제
 - 항미생물제제(안약) 신장·비뇨기계 약물

14. 이비인후과 약물

- 부신피질호르몬제(점비약)
- 항미생물제제(이비인후과용)
- 설하면역치료제 첫 투여분

15. 피부과 약물

- 스테로이드 외용제 중 매우강함(very strong) 단계
-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 백반 치료제
- 각화증·건선 치료제(일반의약품은 제한 없음)
- 한센병 치료제
- 기타: 이미퀴모드(imiquimod),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

16. 정신의학과 약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